| 의안번호 | 제 373 호 |
|---|---|
| 의결<br>연월일 | .  .  .<br>(제  회) |

#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발의자 | 육미선 의원 등 6인 |
|---|---|
| 발의연월일 | 2020년 3월 4일 |

#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 번 호 | 373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발 의 자 : 육미선, 박상돈, 최경천, 박형용, 심기보, 이상욱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시행( ‘19.12.25.)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**가.** 조례 제명을 변경함.

-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→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
**나.** 여성폭력, 여성폭력피해자,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함. (안 제2조)
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‘여성폭력’ 범위 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)을 포괄적으로 포함

**다.** 도지사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함. (안 제5조)

**라.**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명시하고,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, 관련기관,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7조)

마.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11조에 따른 ‘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8조~안 제14조)

바.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15조)

사. 기존 조례의 ‘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’는 개정되는 조례의 ‘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로 봄.

(부칙 제2조)

3. **의안전문** : 붙임

4. **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- 18호

다. 협　　의 : 여성가족정책관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”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3. “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 가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
   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   다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,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

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1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4.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여성폭력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,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·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내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, 관련기관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에 대한 상담 · 의료 · 법률지원 사업
2. 피해자에 대한 취학·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
3. 피해자의 보호, 회복, 자립·자활 지원 사업
4.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· 모니터링 사업
5.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교육 · 홍보사업
6.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업
7. 그 밖에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· 기능) 도지사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·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·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
2. 다음 각 목의 기관 · 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

가.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·단체

나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
다. 각급 교육기관, 교육청 등 교육기관

라. 경찰 및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

3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 아동・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성한 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여성폭력방지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“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“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“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)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**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

제16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2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

제10조(상담소의 설치 · 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“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·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상담소의 설치 · 운영 기준,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“보호시설“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보호시설: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2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4. 외국인보호시설: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. 다만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5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6.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 ·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보호시설의 설치 · 운영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, 치료,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, 수사 지원,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이하 “통합지원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2. 관련 기관·시설과의 연계
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 보호

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(이하 "상담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상담소는 외국인,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상담소의 설치·운영기준,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보호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"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(認可)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,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, 취사원,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.

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의 기준,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(職種)과 수(數) 및 인가기준(認可基準)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**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

제9조(지원시설의 종류)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 지원시설: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
2. 청소년 지원시설: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, 취학·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
3. 외국인 지원시설: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(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)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,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
4.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: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,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

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5조(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.
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 · 신고절차,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·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상담소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“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·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)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,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.
⑤ 상담소의 설치기준 · 신고절차 · 운영기준,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#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○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·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 및 실태조사 용역비 소요경비 등

## 3.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여성폭력 실태조사), 제7조(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) 등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20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

나. 추계 결과

○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비 : 20,000천원 (3년)

○ 피해상담소 운영 : 3,471,448천원 (매년)

○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: 1,567,602천원 (매년)

○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: 243,521천원 (매년)

○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운영 지원 : 97,050천원 (매년)

○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등 : 882,704천원 (매년)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비 : 도비(100%)

○ 피해상담소 운영 : 국비(50%), 도비(25%), 시군비(25%)

○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: 국비(70%), 도비(15%), 시군비(15%)

○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: 국비(100%)

○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운영 지원 : 국비(50%), 도비(50%)

○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등 : 국비(70%), 도비(15%), 시군비(15%)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(2020년) | 2차년도 (2021년) | 3차년도 (2022년) | 4차년도 (2023년) | 5차년도 (2024년)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세 입** | | **6,262,325** | **7,534,790** | **7,514,790** | **7,514,790** | **7,534,790** | **36,361,485** |
| 국 비 | | 3,622,003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21,007,603 |
| 도 비 | | 1,516,112 | 1,816,860 | 1,796,860 | 1,796,860 | 1,816,860 | 8,743,552 |
| 시군비 | | 1,124,210 | 1,371,530 | 1,371,530 | 1,371,530 | 1,371,530 | 6,610,330 |
| **세 출** | | **6,262,325** | **7,534,790** | **7,514,790** | **7,514,790** | **7,534,790** | **36,361,485** |
| 피해 상담소 운영 | | 3,471,448 | 4,165,738 | 4,165,738 | 4,165,738 | 4,165,738 | 20,134,400 |
|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| | 1,567,602 | 1,881,122 | 1,881,122 | 1,881,122 | 1,881,122 | 9,092,090 |
|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사업 | | 243,521 | 292,225 | 292,225 | 292,225 | 292,225 | 1,412,421 |
| 폭력예방교육지역지원기관운영 | | 97,050 | 116,460 | 116,460 | 116,460 | 116,460 | 562,890 |
|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| | 240,817 | 288,980 | 288,980 | 288,980 | 288,980 | 1,396,737 |
| 폭력시설 기능보강 등 기타 | | 641,887 | 770,264 | 770,264 | 770,264 | 770,264 | 3,722,943 |
|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 | | | 20,000 | | | 20,000 | 40,000 |
| **재원 조달** | | 6,262,325 | 7,534,790 | 7,514,790 | 7,514,790 | 7,534,790 | 36,361,485 |
| 의존재원 | 소 계 | 3,622,003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**21,007,603** |
| | 보조금 | 3,622,003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4,346,400 | 21,007,603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자체수입 | 소 계 | 1,516,112 | 1,816,860 | 1,796,860 | 1,796,860 | 1,816,860 | **8,743,552** |
| | 지방세 | 1,516,112 | 1,816,860 | 1,796,860 | 1,796,860 | 1,816,860 | 8,743,552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시·군비 | | 1,124,210 | 1,371,530 | 1,371,530 | 1,371,530 | 1,371,530 | 6,610,330 |
| 기 타 (민간 자부담) | | | | | | | |